

계약안내

당첨호수의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을 확인하신 후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납부와 계약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당 사 견본주택에서 계약을 체결하셔야합니다.

계약체결 일정 안내 ※ 예비 입주자의 경우 별도 안내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계약체결 일정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시간에 맞게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아파트 공급계약진행) ※ 추가선택품목(옵션) 추후 별도 안내 예정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계약장소
2025.08.25(월) ~ 2025.08.27(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시간 준수	‘제기동역 아이파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13)

※ 계약체결 전 서류 미제출자의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유형에 맞는 당첨자 구비서류 안내문 참조)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계약체결 구비서류

※ 아래 제반 제출서류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7.25.)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시	자격검증서류 일체	본인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	아파트 계약금, 발코니 확장 계약금 계약금의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본인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 ※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①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75,000원 ②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75,000원 ※ 발코니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①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0,000원 ※아파트/발코니 각각 발행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발급용도 : 계약 체결용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시 ‘발급용도(직접 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제기동역 아이파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작성 후 지참(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옵션)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함)
	추가선택품목(옵션) 신청서	-	추가선택품목(옵션) 선택 후 지참
	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	-	서류검수 시 제출서류 일체(제출한 경우 제외)
제 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본인 외 모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위임장	본인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서류검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리 계약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2통 제출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서명 또는 날인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계약금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하나은행	591-910070-44404	(주)하나자산신탁
발코니 확장비	하나은행	591-910070-43804	(주)하나자산신탁
입금시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기재 (예 : “101동5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05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안내문

자격검증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예비당첨자 경우 추첨 참여 전 반드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 당첨의 적격여부, 부적격 사항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동호수 추첨 직후 계약체결을 진행하므로 계약금 이체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일이체 한도 및 인증서 확인, 폰뱅킹 준비, 현장 현금, 수표 수납 불가)
 동호수 추첨 즉시 계약금을 납부 완료하여야 계약체결이 진행되며, 미입금시 추첨 동호수의 포기로 간주하여 후순번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추첨일시

구분	추첨시간	추첨일자 및 장소	사전 서류제출기간	계약체결
특별 공급	(1) 44A,B	10시 00분 입장 마감	• 일시 : 2025.08.18.(월)~2025.08.20(수) (10:00~17:00) • 장소 : 제기동역 아이파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13) ※ 부득이하게 자격 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는 해당 타입 참여 1~2시간 전 방 문하시어 자격검증 필수 진행 ※미검증 또는 부적격시 참여 제한 됨	동·호수 추첨 후 즉시 계약
	(2) 51	10시 30분 입장 마감		
	(3) 59A,B	11시 00분 입장 마감		
일반 공급	(1) 44A,B	11시 30분 입장 마감		
	(2) 51	12시 00분 입장 마감		
	(3) 59A,B	12시 30분 입장 마감		

계약체결 금액

구분	아파트 계약금		발코니 확장 계약금	
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	
계좌번호	591-910070-44404		591-910070-43804	
예금주	(주)하나자산신탁		(주)하나자산신탁	
금액	44A,B	총10% 중 1차 계약금 : 1천만원 → 계약 후 30일 내 나머지금액	44A	1,250,000
			44B	1,170,000
	51	총10% 중 1차 계약금 : 2천만원 → 계약 후 30일 내 나머지금액	51	1,910,000
	59A,B	총10% 중 1차 계약금 : 3천만원 → 계약 후 30일 내 나머지금액	59A	2,050,000
			59B	1,980,000
입금방법	입금자명:[동][호수][계약자명] ※ 101동 201호 홍길동의 경우 성명란에 “1010201홍길동”			

계약체결 구비서류

※ 아래 제반 제출서류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7.25.)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시	계약금	-	계약금 입금 준비(아파트 계약금, 발코니 확장 계약금)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본인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 ※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①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75,000원 ②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75,000원 ※ 발코니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①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0,000원 ※아파트/발코니 각각 발행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 발급용도 : 계약 체결용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시 “발급용도(직접 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제기동역 아이파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와 일치 여부 확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추첨 후 작성(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옵션)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함)
제 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본인 외 모두)	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	-	서류검수 시 제출서류 일체(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위임장	본인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서류검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리 계약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2통 제출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서명 또는 날인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유의사항

-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확인 결과 부적격 판정 시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추첨일 당일 주택영별 입장시간 이전까지 입장하여야 하며 미 입장 시 예비입주자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 받은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7호에 의거 당첨자로 관리되며, 해당 청약 통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통장 재사용 불가)
- 예비입주자 중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부부가 모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先신청자 : 접수시간이 빠른 사람 / 後신청자 : 접수시간이 늦은 사람)
 - 부부 중 1인만 추첨 참가 시 : 추첨 동·호수 유요 - 부부 모두 추첨 참가 시 : 先청약신청자 추첨 동·호수 유요 / 後청약신청자 추첨 동·호수 계약해제 및 당첨무효 처리(계좌부활 처리)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 청약신청서 가점제로 선정하여 동·호수 배정을 받은 예비입주자는 가점제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 이후 청약자격에 관한 전산검색 및 관련행정기관 증명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를 받을 경우, 배정받은 동·호수는 무효처리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예비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동·호수는 후순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후순위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으로 배정 받은 동·호수를 계약기간(추첨 당일) 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됩니다.
 - 계약내용 : 아파트 공급계약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등
-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은 타입별 순번 순으로 진행되며, 선순위에서 미계약세대 물량이 전부 소진될 경우 후순위 예비입주자는 동·호수 추첨 참여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정당당첨세대 중 부적격 및 미계약 세대의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정당당첨세대 중 부적격 및 미계약 세대의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세대는 사업주체에서 일의공급합니다.
- 동·호수 추첨장소에는 1인(본인 또는 대리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계약 일정은 즉시 진행됩니다. 앞 순번에서 타입별 잔여세대 분량 원로시 본인에게 추첨 기회가 오지 않을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5.07.25.)의 내용을 따릅니다.

인지세 납부 안내(1)

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 ※ 2023년 1월 1일부터 인지세법 일부개정

과세대상	납부기한	기재금액	계약금 납부
부동산 분양계약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분양대금(총 공급금액)	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
분양권 매매계약서	명의변경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	

※ 2023년 1월 1일부터 인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계약체결일 납부에서 계약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로 변경되었지만, 원활한 계약진행을 위해 계약체결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액

• 아파트 공급계약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구매 금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매도인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매수인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옵션계약

발코니 확장 및 추가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구매 금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매도인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매수인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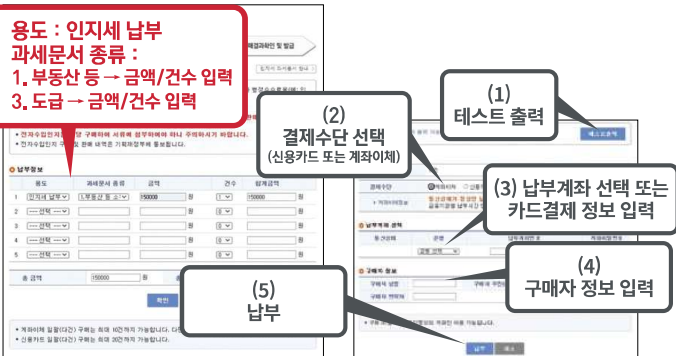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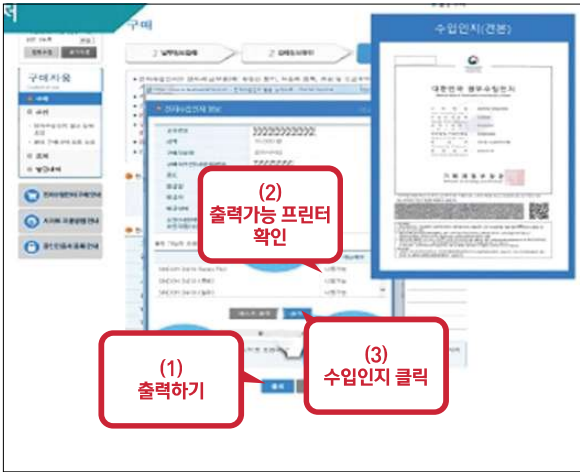
※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간 연대하여 균등 납부(각 50%)

■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구입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구입방법	(1) 해당 홈페이지 접속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 “전자수입인지” 검색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3)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서비스 클릭 후 구매선택 (4) 납부정보 입력 1. 용도 : 인지세 납부 2. 과세문서 종류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3. 금액 : 해당금액 입력 4. 건수 : 1건 (5)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 후 출력	(1) 인근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2)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1. 용도 : 인지세 납부 2.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3. 매수 : 1매 4.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기재 (3) 결제(현금납부만 가능) (4) 전자수입인지 발급
유의사항	▶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할 경우 납세 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등기시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세 납부 안내(2)

전자수입인지 구입 방법

① www.e-revenuestamp.or.kr 접속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② 로그인_비회원 구매 가능  (2) 로그인 후 구매 클릭 (1) 로그인 또는 비회원서비스 ○ 수입인지는 회원가입 로그인, 비회원 서비스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의 경우에도 구매한 수입인지 조화가 가능
③ 수입인지 구매하기_납부정보 입력  • 용도 :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종류 : 1. 부동산 등 → 금액/건수 입력 3. 도급 → 금액/건수 입력 (1) 테스트 출력 (2) 결제수단 선택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3) 납부계좌 선택 또는 카드결제 정보 입력 (4) 구매자 정보 입력 (5) 납부 ○ 최종 결제 전 프린트 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수입인지를 납부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④ 출력  (1) 출력하기 (2) 출력가능 프린터 확인 (3) 수입인지 클릭 ○ 전자수입인지는 출력물이 원본이므로 1회만 출력가능하며, 재출력은 절대 불가하므로, 사전에 테스트 출력을 통하여 인쇄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 버튼 클릭 시 새창으로 전자수입인지정보와 출력가능한 프린터 목록을 제공합니다. 출력가능한 프린트를 확인하신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입인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바, 6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세대는 본 샘플을 참고하여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계약자(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계약자(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계약자(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자(본인) 휴대전화번호
① 자금 조달계획	② 금융기관 예금액 계약자(본인) 명의 예금(적금 등) 원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계약자(본인) 명의 주식, 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금 등 원
	④ 증여·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 금액 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현금, 펀드/보험해지, 귀금속 매도, 입주시까지 예상 추가소득 등 (②, ③, ④, ⑥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원
	※ 4번 기재시 필수 입력 ※ 부부, 직계존속 중첩으로 차입 받을 경우 그 밖에 관계 체크(EX, V 그 밖에 관계(부부, 직계존속(부, 모, 자녀 등) [] 부부 [] 직계존비속(관계 : 부, 모, 자녀 등) [] 그 밖의 관계(형제, 자매, 사촌, 지인 등)	※ 5번 기재시 필수 입력 [] 보유 현금 [] 그 밖의 자산(종류 : 미래소득, 보험금, 퇴직금 등)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타 부동산매도, 기존 전·월세 보증금 회수 등 원	⑦ 소계 [②+③+④+⑤+⑥]합산금액 원
추첨공급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보증주택 담보대출 등 원 마이네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원 제기동역 아이파크 해당동, 호수의 분양가 60% 원 (대출 종류 : 중도금 집단 대출)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제기동역 아이파크를 제외한 기존 보유주택 여부(주택, 분양권, 입주권 포함) [] 미보유 [] 보유 (건)	제외한 그 외 주택 중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⑨ 임대보증금 취득 주택 향후 임대시 실행 계획 자금 (⑩.입주계획 : 임대 체크 시) 원	⑩ 회사지원금·사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원
	⑪ 그 밖의 차입금 제3자(가족/친인척 포함)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빌리는 자금 등 원	⑫ 소계 [⑧+⑨+⑩+⑪]의 합산 금액 원
	※ 11번 기재시 필수 입력 [] 부부 [] 직계존비속(관계 : 부, 모, 자녀 등) [] 그 밖의 관계(형제, 자매, 사촌, 지인 등)	
	⑬ 합계	[⑦ + ⑫] 합산금액(*아파트 총 공급금액과 금액 동일)⑬ 항목과 동일한 금액 원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총 거래금액	⑬번 항목과 동일한 금액 원
	⑮ 계좌이체 금액	⑬번 항목과 동일한 금액 원
	⑯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	작성 금지 원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작성 금지 원
	지급 사유(	작성 금지)
⑱ 입주 계획	[] 본인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해당 입주예정자 간 체크 (입주 예정 시기 : 28년 09월)	[] 임대 ⑳번 기재시 체크 (전·월세) [] 그 밖의 경우 작성 금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제7항·제9항·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날짜 기재 금지(신고시점에 기재 예정)

년 월 일

제출인 계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참고사항

항목		상세항목	세부내용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적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채권)매도액	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증여·상속 등	가족 등 증여·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현금 등 기타	보유 중인 현금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펀드/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이에 준하는 자금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타 부동산 매도액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기존 보증(전세)금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중전부동산 권리가액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발생한 중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이에 준하는 자금	부동산등의 매각(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차입금등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금외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승계) 자금
		신용대출	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그 밖의 대출	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	금외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 여부에 V 체크, 보유란에 V 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임대보증금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신규 임대차 계약	금외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회사지원금·사채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조달자금 지급방식	계좌이체 금액	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	증빙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
	보증금·대출금 승계	기존 대출금·임대차 보증금 승계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
	현금 등 기타지급	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	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
입주계획	본인입주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ex. 분가한 자녀가족,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
	임대(전월세)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
	그 밖의 경우(재건축 등)	입주 또는 임대 이외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